

충청북도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9.25.(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9월 8일
- 회부일자 : 2003년 9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9. 23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

가. 제안이유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2의 건국운동이 종료되어 대통령령인 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 충청북도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충청북도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한국인상을 정립하여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 10. 1일 대통령 직속에 설치한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조례 제2417호, 1998. 11. 2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삭제

- 제2외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의규정폐지령(대통령령 제18005호, 2008.6.29)

제2외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